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4623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병권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 (이해민의원안)	3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현황	4
나. 검토의견	5

I. 개요

1. 이해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462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이해민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1. 27.
- (3) 회 부 일 : 2025. 11. 2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우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한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산업기반이 비교적 취약한 제주특별자치도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고, 우수기업 유치 및 고용창출을 위해서는 해당 과세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이에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21조의8제1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연장(이해민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8) ☐ 감면대상: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면대상사업을 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감면율: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감면한도: 투자누계액 50% + 상시 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근로자, 서비스업 2,000만원) ☐ 적용기한: <u>2028. 12. 31.</u> * 발의 당시 2025. 12. 31.	☐ 적용기한 연장 ☐ 감면대상: (현행과 같음) ☐ 감면율: (현행과 같음) ☐ 감면한도: (현행과 같음) ☐ 적용기한: <u>2028. 12. 31.</u> ☐ 시행일: 2026. 1. 1.

* 이해민의원안 2025. 11. 27. 발의(의안번호 14623)

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지정 현황

□ 법 제121조의8에 따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의미하며, 현재 2개 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현황]

구 분	세부내용
1단지	○ 목적 :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핵심사업으로서 정보통신 및 생명과학 분야의 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 위치/면적 : 제주시 아라동 일원 / 1,098천㎡(약 33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2005년~2025년 / 9,070억원 ○ 주요 유치업종 : IT·BT 관련기업, 공공 및 민간연구소 등
2단지	○ 목적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1단지) 조성완료에 따라 IT, BT, CT, ET등 첨단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제주지역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 위치/면적 : 제주시 월평동 일원 / 848천㎡(약 26만평) ○ 사업기간/사업비 : 2016~2028년(예정) / 3,921억원 ○ 주요 유치 업종 : IT·BT·CT·ET·ST 관련 기업, 연구소 등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현황]

업종	기업수	비율	주요기업
IT	110	58%	카카오(코스피), 이스트소프트(코스닥)
BT	44	23%	덴티움(코스닥), 대봉엘에스(코스닥), 제주개발공사(지방공기업)
ET 등 기타	36	19%	한국에너지종합기술, 제주산학융합원, 제주지역사업진흥원
합계	190	100%	

주: 2024년 12월 기준

자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1조(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조성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 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개정안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 세액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하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기업유치 및 투자 촉진 등을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2025년 세법개정을 통해 동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말에서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였으므로 입법취지가 달성되었음.

문 의 처
02)6788-5154